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 발의연월일: 2024. 6. 3.

발 의 자:임미애·권칠승·이연희

박은정 · 김정호 · 강훈식

최기상・김 윤・이용우

임호선 · 김성환 · 이달희

신정훈 · 문금주 · 신장식

한민수 · 김성회 · 강경숙

천하람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,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.

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. 이로 인 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, 세수,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.

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7호, 제27조의2, 제34조제9호의3, 제57조의3, 제68조의4,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"제73조의4"를 "제73조의5"로 한다.

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정부는 예산이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에는 지역균형발전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지역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

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7조의3(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각 지역이 균형있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"라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지역균형발전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8조의4(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 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지역균형 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지역균형발전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지역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6의3.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
-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하고,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73조의4(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각 지역이 균형있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지역균형발전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, 제34조제9호의3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	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
등) ① · ② (생 략)	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	③
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	
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	
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73조의4</u> 에 따른 중장기 기	2. <u>제73조의5</u>
금재정관리계획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① (생 략)	④ ~ ⑪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예산의 원칙) 정부는 예산	제16조(예산의 원칙)
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	
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	
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정부는 예산이 「지방자치분
	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
	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
	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
	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
	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
	여 노력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27조의2(지역균형발전인지 예
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 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-----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~ 9의2. (생략)

<u><신</u>설>

10. ~ 16. (생략)

<신 설>

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 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 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에 는 지역균형발전 기대효과, 성 과목표, 지역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 9의3.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 10. ~ 16. (현행과 같음)

제57조의3(지역균형발전인지 결 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각 지 역이 균형있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지역격차를 개선 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지역균 형발전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<신 설>
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부서류)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 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(이하 "기 금운용계획안등"이라 한다)을

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에 는 집행실적, 지역균형발전 효 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 야 한다.

제68조의4(지역균형발전인지 기 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 는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 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(이하 "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 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 여야 한다.

- ②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지역균형발전 기대 효과, 성과목표, 지역별 수혜분 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부서류) -----

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 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 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~ 6의2. (생략) <신 설>

7. (생략)

<신 설>

계획 등) (생 략)

•	

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 6의3.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 용계획서

7. (현행과 같음)

제73조의4(지역균형발전인지 기 금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각 지역이 균형있게 기금의 수 혜를 받고 기금이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 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 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 다.

②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 서에는 집행실적, 지역균형발전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.

제73조의4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제73조의5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 (현행 제73조의4와 같